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32
----------	-------

발의연월일 : 2025. 9. 16.

발 의 자 : 이개호 · 정진욱 · 위성곤

박수현 · 양부남 · 박홍근

정준호 · 박희승 · 김문수

김윤덕 · 김남희 · 문진석

서미화 · 문정복 · 안호영

서영교 · 권철승 · 이정문

여기구 · 김준혁 · 김승원

염태영 · 김주영 · 조계원

안도걸 · 전용기 · 조인철

민형배 · 이학영 · 신정훈

이양수 · 박균택 · 전진숙

주호영 · 박용갑 의원

(35인)

제안이유

최근 암과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심·뇌혈관질환, 신장염, 치매, 파킨슨병 등의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각종 자가면역질환과 감염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맨발걷기로 암·심뇌혈관질환·치매·파킨슨병·아토피·류마티스관절염 등 질병의 치유, 척추관협착증·요통 등 통증의 감소, 불면증 및 스트레스의

감소, 고혈압, 고지혈, 당뇨 및 혈당 수치의 개선, 소화기능 개선,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의 개선 등 다양한 치유 경험담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맨발걷기를 통한 지압 효과와 땅속의 자연 에너지가 인체에 유입되어 나타나는 접지 효과가 다양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맨발걷기가 국민 건강 증진의 효과적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맨발걷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또한, 사단법인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가 2018년 발족한 이후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많은 국민이 동참하고 있으며, 25년 7월 현재 17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맨발걷기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맨발걷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맨발걷기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맨발걷기 관련 사업과 지원 체계가 부족하여, 맨발걷기가 전국민운동으로 확산되는 데 한계에 직면함. 특히, 맨발걷기의 건강 효과에 대한 과학적 실증 연구가 미비하여 그 효과에 대한 국민적 확신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며, 겨울철에는 그에 적합한 맨발길 부족으로 맨발걷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그로 인해 봄·여름·가을에 축적한 건강이 겨울에 서서히 잠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맨발걷기길·동절기용 방한맨발길 등을 확충하며, 맨발걷기 지도자를 양성하고, 맨발걷기의 건강적 효과를 실증하고 홍보하여 맨발

걷기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함으로써, 의료비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절감하고 국민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맨발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맨발걷기 국민운동”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기관·단체 등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추진하는 맨발걷기 활성화 운동을 총칭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국민운동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 효과 실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맨발걷기시설의 확충, 건강증진 효과 실증, 맨발걷기의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마.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맨발걷기길·동절기용방한맨발길 설치·운영하여야 함. 특히, 시·군·구마다 1개 이상의 동절기용방한맨발길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7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국민운동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 지원과 국유·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맨발걷기 활동단체 간의 계약으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하고, 그 개발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9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맨발걷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차. 시장·군수·구청장은 맨발걷기우수마을로 지정된 마을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맨발걷기의 건강적 효과를 실증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설문조사·치료 경험 연구, 의료비·건강보험료 영향조사, 착용형 건강측정기를 통한 건강지표 분석, 혈액·소변 검사결과와 맨발걷기 연관성 연구, 맨발걷기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에 관한 병원 연구를 실시하고, 그 연구결과 등을 공표하여야 함(안 제13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의 건강적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4조).

파. 보건복지부장관은 맨발걷기 교재의 발행·공급과 맨발걷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맨발걷기 지도자 자격증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하. 보건복지부장관은 맨발걷기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제17조).

거. 매년 5월 10일을 ‘맨발걷기의 날’로 하고, 이 때 맨발걷기 관련 행사 및 홍보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맨발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 국민운동”이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맨발걷기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맨발걷기 활성화 운동을 말한다.
2.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3. “맨발길”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천연의 흙·황토·모래 등으로 조성된 길로서 지구와 연결된 길을 말한다.
4. “동절기용방한맨발길”이란 겨울철이나 악천후에도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유리 온실이나 캐노피, 비닐하우스 등 난방시설이 설치된 실내외 맨발길을 말한다.
5. “맨발걷기시설”이란 맨발길 및 동절기용방한맨발길과 그에 부속된 세족시설·신발장·비가림막·화장실 등 각종 시설을 말한다.

6. “맨발걷기우수마을”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하고 편리하도록 맨발걷기시설이 잘 설치·운영되는 지역(통, 리, 마을 또는 특정구역 단위의 지역을 말한다)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마을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맨발걷기의 건강증진 효과를 실증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국민운동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맨발걷기 국민운동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맨발걷기 국민운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국민운동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맨발길·동절기용방한맨발길 등 맨발걷기시설의 확충 및 개선
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맨발걷기의 건강증진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5. 맨발걷기 실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6. 맨발걷기 교육 및 홍보 활동
 7.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환경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맨발걷기 국민운동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맨발걷기 교육 시행계획은 교육부장관과 협력하여 수립·시행한다.

②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시·도시행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하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맨발걷기 교육 시·도 시행계획은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시·군·구시행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맨발걷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3. 그 밖에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맨발걷기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1. 보건복지부의 맨발걷기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맨발걷기 관련 법인·단체 등의 임직원 및 맨발걷기 분야의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의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한의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건축사 또는 기술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8.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9. 대학이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

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1.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제7조(맨발걷기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계획이나 시·군·구계획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맨발길 등
맨발걷기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동절기용방한맨발길을 포함하여 시·군·구마다 1개 이상의 동절기용방한맨발길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의 실내나 그 밖의 소관 체육시설의 실내 또는 공원 등에 동절기용방한맨발길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체육시설 등의 설치·운영 목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맨발길·동절기용방한맨발길 등 맨발걷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맨발길·동절기용방한맨발길 등 맨발걷기시설의 설치·운영·점검·보수 등을 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맨발걷기 국민운동 관련 법인·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맨발걷기 국민운동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활동 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맨발걷기 활동단체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9조(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은 맨발걷기 교육, 맨발걷기 건강 증진 체험, 맨발걷기와 관광의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료기관 등에 대한 맨발걷기시설 설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시설 등에서 그 환자·수급자·거주자 및 이용자 등의 건강을 위하여 맨발걷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맨발걷기우수마을 지원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맨발걷기우수마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우수마을로 지정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의 통장·이장 또는 그 지역 대표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맨발걷기 우수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제교류 및 협력) 보건복지부장관은 맨발걷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기관 또는 관계 외국 학자들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맨발걷기에 관한 연구·홍보 및 교육 등

제13조(맨발걷기 효과의 조사·연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맨발걷기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증명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거나 이를 의료기관·연구소·대학·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내외 공신력있는 문헌 및 자료의 조사, 설문 조사, 치료경험담의 조사를 통한 질병 예방 및 치료의 효과 연구
2. 맨발걷기가 의료비 절감 및 국민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연구
3. 착용형 건강측정기(wearable healthcare device)에 의한 심박수·혈압·심전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지표 등의 조사 및

연구

4. 맨발걷기 정도가 혈구수치, 간기능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신장 기능 수치, 혈당 수치, 혈뇨 수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지표 등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연구

5. 맨발걷기 정도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미치는 효과를 의료기관을 통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연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방법과 위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맨발걷기 효과의 연구 결과 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른 조사·연구결과를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른 조사·연구에 따라 밝혀진 맨발걷기의 건강 효과를 알리기 위한 홍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밝혀진 맨발걷기의 건강효과를 참고하여 맨발걷기 실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15조(맨발걷기 교재 발행 및 공급) 보건복지부장관은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활성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의 올바른 방법, 맨발걷기시 안전상 유의사항, 맨발의 건강적 효과 등을 담은 맨

발견기 교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학생 대상의 맨발견기 교재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 제16조(맨발견기 교육 및 지도자 양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바른 맨발견기 실천을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맨발견기의 건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맨발견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맨발견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맨발견기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격 기준 및 자격 부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맨발견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맨발견기 정보를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맨발견기 국민운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맨발견기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맨발견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맨발견기 교육정책 반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맨발견기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 맨발견기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시·도교육감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맨발걷기의 날 지정·운영) ① 맨발걷기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맨발걷기의 날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의 날과 맨발걷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맨발걷기의 날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